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2호

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

1. 지정해제 지역 : 서울시 종로구 · 중구 · 성동구 · 광진구 · 동대문구 · 중랑구 · 성북구 · 강북구 · 도봉구 · 노원구 · 은평구 · 서대문구 · 마포구 · 양천구 · 강서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· 영등포구 · 동작구 · 관악구 · 강동구, 과천시, 성남시 수정구 · 분당구, 하남시, 광명시

2. 해제일 : 2023년 1월 5일

3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

시 · 도	현 행	조 정(2023.1.5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(25개區)	서초구 · 강남구 · 송파구 · 용산구
경기	과천시, 성남시[주1)], 하남시, 광명시	−

주1) 중원구 제외